

2021년 제58회 상표 기초 GS - 1월

◆ 강사 정보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16년卒)
제52회 변리사 시험 합격(15년)
김장 법률사무소(16년~17년)
OO국제특허법률사무소(17~19년)
특허법인 OO(19년~현재)
카카오톡 1:1 채팅 방 운영 中¹⁾

※ 2021년 2차 강의 계획²⁾

1월 - 기초GS
2월 - 기본강의, 실전GS[A형]
3월 - 기초GS, 사례강의
4월 - 실전GS[A형]
5월 - 실전GS[B형]
6월 - 실전GS[B형]

◆ 수업 특징

- 1. 기본서 중심의 수업:**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살피고, 주요 사례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1회부터 8회까지 기본서를 훑는 데에 집중합니다.
- 2. 답안지學 위주의 수업:** 한글(HWP)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의의, 취지 및 판례 등 판단기준과 사안 간의 관계에 대하여 “실제 활용이 되는 법리” 및 “앞, 뒤 논리 구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등 답안지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 수업 자료

상상상표법(제4판, 개정 중)³⁾ + 보충 유인물(판례노트 등)

◆ 진도표

회차	내용	
1회차	총칙, 제3조 및 제33조	2문제 (1시간)
2회차	제33조~제35조	2문제 (1시간)
3회차	절차(이익제도) 및 상표권	2문제 (1시간)
4회차	상표권의 침해	2문제 (1시간)
5회차	심판 및 소송	2문제 (1시간)
6회차	마드리드 의정서, 특수표장	2문제 (1시간)
7회차	전 범위	2문제 (1시간)
8회차	전 범위	4문제 (2시간)

◆ 참고자료

다음 [그림 1]과 같이 같이 한글(HWP)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답안지 내 문장마다 코멘트를 달아두어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논리 전개가 필요하지 설명합니다.

◆ 2차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정리

2차 상표법을 준비하는 데에는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여야 하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상표법 주요 사례 1개 내지 2-3개를 섞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동차스럽게, 동차에 맞게 ‘나올 만한 논점’을 중심⁴⁾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카카오톡 > 오픈채팅 > 1:1 채팅 > “박진호” 검색 > 오픈채팅방 개설되어 있음(언제든 질문 환영)

2) 예상 일정이며, 실제 강의 개설 여부는 해당 월의 강의 시간표에 따름

3) 전면개정작업 중으로, 페이지 수를 줄이고 가독성을 늘리는 한편, 판례 원문은 보충 프린터로 제공 예정

4) 필요한 경우 위 1)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논점이나 문제를 先 요청하시면 미리 파악 가능

[그림 1]

<제 1 문> 진한커피

[I. 문제의 소재 - 침해금지처분의 의의/요건(民執法300②)]

①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② 구체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甲의 사용이 乙 등록상표의 침해인지, 乙에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甲의 사용행위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

1. 침해금지청구권의 의의 및 요건

i) 상표권자는 권리의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바(法107), (ii) 乙의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속 중, [등록상표와 동명의 제호로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甲의 사용이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정당권원으로서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효력제한사유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1) 원칙

[형식적으로는 法2①11의 규정에 해당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상품에 대하여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判例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

문자의 소재 → 해당자들이 청문 부분 → 문제에서 요하는 논점이 무엇인지, 해당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볼 필요가 있음.

문자의 소재, 논리의 전개 등 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함

이와 같이 법조문을 民執法300②으로 표현하여도 되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과 같이 풀어써도 되며,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당락에 큰 영향이 없음

단락의 제목과 단락의 내용은 반드시 서로 상응하여야 하고, 단락이 길어질 때에는 줄 위치를 사용하여 흐름을 조율할 수 있음.

법으로 요건 위반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표시하여 요건충합 사실화

"등록상표와 동명의 제호로 동일한 지정 상품"이라고 하여 "보호범위 내"인지 여부를 생각함

형식 조문을 병기할 것

통상 특허법 또는 상표법에서의 단락 구성은 이와 같이, <1. 의의 또는 원칙 등 일반론, 2. 판례(또는 심사실무), 3. 사안>순으로 전개함

상표적 사용이라고 하면 형식 기재해야 하는 문구이므로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바꾼다고 생각할 것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다고 볼 근거 → 사안분석 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임